

1. 개정이유

사전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철도준사고 신설·의무보고 확대·자율보고 신설, 철도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되었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철도준사고의 범위·의무보고·자율보고 절차 및 방법,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의 대상·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 정의(안 제1조의2·3·4 별표1·1의2·1의3)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의 범위 규정

나.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대상 추가(안 제41조의2)

현행 철도운영자등에게만 부과된 소속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의무를 철도 운영자등과 계약관계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까지 확대

다.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안 제41조의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의무화가 부과 되어 이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교육내용·실시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가 임의로 지연운행 발생사유·지연시간을 조작 시 종사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관제업무종사자 준수사항에 철도사고등의 관련사실을 거짓·허위 기록하지 말도록 규정 추가

마. 의무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2)

철도종사자등에게 부과된 의무보고 대상 중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자율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86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5로 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의2와 같다.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의3과 같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로 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안전관리기준이 전문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 판단하는 경우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철도사고”를 “철도사고, 철도준사고”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1과”을 “별표1의4와”(현행 별표1)로 하고, 제11조 중 “별표 1의2”를 “별표1의5”(현행 별표1의2)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을 “별표11”로 한다.

제41조의2조 본문 중 “철도운영자등이”를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으로 각각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정비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철도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 등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직무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 제목 중 “검사필증”을 “검사증명서”로 한다.

제57조제2항 및 제75조의13제1항제1호 중 “완성검사필증을”을 “완성검

사증명서를”로 각각 한다.

제76조의2제2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76조의5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 관련 사실들을 거짓·허위로 기록하지 말 것

제86조 제목 중 “철도사고등의 보고”를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로 한다.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6조의2(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6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성능 등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성능 등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3.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하자조치 및 피해보상 등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고장·결함의 경우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중정비가 요구되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이미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철도차량 정비 중 차상신호장치, 추진장치, 주행장치 등 주요장치의 고장 등으로 계획된 열차운행을 위해 출고하지 못한 경우
3. 차량기지 내 신호 및 궤도 장애 등으로 계획된 열차운행을 위해 출고하지 못한 경우
4.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한 철도차량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고장·결함의 경우

- ③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장·결함·기능장애 보고서(별지 제45호의18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철도안전 자율보고서(별지 제45호의19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4(현행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표 1의5(현행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별표 1의2·별표 1의3, 별표 4·별표 5·별표 12의2·별표 13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11 제목 중 “(제37조제2항관련)”을 “(제37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5호의18, 별지 제45호의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 처리절차 및 별지 제35호 제목·본문 중 “완성검사필증”을 “완성검사증명서”로 각각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사고의 범위(제1조의2 관련)

1. 충돌사고 :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2. 탈선사고 :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3. 열차화재사고 :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사고
4. 기타열차사고 : 철도차량에서 위험물(「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해물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5. 건널목사고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에 따른 건널목에서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6. 철도교통사상사고 :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하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공중(公衆), 직원(이하 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7. 철도안전사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동반하지 않고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인명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 가. 철도화재사고 :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전기 및 통신 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 다. 철도안전사상사고 : 위 ‘가’목과 ‘나’목의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公衆),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 라. 기타철도안전사고 : 위 각 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비고

1. “철도사고”란 위 각호의 사고를 말한다.(단 전용철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철도교통사고”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고를 통칭한다.
3. “열차사고”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고를 통칭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0.10.8.>

철도준사고의 범위(제1조의3 관련)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2. 열차가 운행하고자 하는 진로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열차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경우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굴러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레일파손,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이 누출된 경우
9.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0.10.8.>

운행장애의 범위(제1조의4 관련)

1. 무정차통과 : 정차역을 통과한 경우(단, 안전상의 이유는 제외한다.)
2. 지연운행 : 출발역, 정차역 또는 종착역에서 계획시간표보다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열차의 운전정리로 지장 받은 열차의 지연시간은 제외한다.
 -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 1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나. 일반여객열차 :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검사대상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문답형 검사	반응형 검사	
1.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노면전차 및 철도장비운전면허응시자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 인식및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 판단및행동력 -추론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2.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자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인식및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 판단및행동력 -추론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비고:

1.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

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검사인력

가. 자격기준

등급	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검사관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심리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심리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선임검사관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선임검사관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심리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심리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으로서 검사관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검사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보유기준

- 1)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1일 75명을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검사관 1명과 선임검사관 1명 및 검사관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2) 1일 검사인원이 25명 추가될 때마다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관을 1명씩 추가로 보유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설기준

- 1) 1일 검사능력 75명(1회 25명) 이상의 검사장(70㎡ 이상이어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산된 검사장은 제외한다.

나. 장비기준

- 1) 주의력(복합기능·선택주의·지속주의), 인식 및 기억력(시각변별·공간지각·작업기억), 판단 및 행동력(추론·민첩성)을 검사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등 검사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2) 적성검사기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주의력·인식 및 기억력·판단 및 행동력 등)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업무규정

가. 조직 및 인원

나. 검사 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검사체제 및 절차

라.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장비운용·관리계획

바. 자료의 관리·유지

사. 수수료 징수기준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성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일반사항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 이상의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적성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항목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자 등의 수급계획과 운영계획 및 검사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 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의 분산된 5개 이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제41조의3 관련)

1. 직무별 종사자 교육내용 및 시간

가. 운전업무종사자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철도시스템 일반 2)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3) 운전이론 4) 운전취급 규정 5) 철도차량 기기취급에 관한 사항 6)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21시간 이상

나. 관제업무종사자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열차운행계획 2)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3) 열차운행선 관리 4) 관제 관련 규정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21시간 이상

다. 여객승무원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직무관련 규정 2) 여객승무 위기대응 및 비상시 응급조치 3) 통신 및 방송설비 사용법 4) 고객응대 및 서비스 매뉴얼 등 5) 여객승무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21시간 이상

라. 열차 조성업무 수행자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직무관련 규정 및 안전관리 2) 무선통화 요령 3) 철도차량 일반 4) 선로, 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열차조성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14시간 이상

마. 신호기 · 선로전환기 · 조작판 취급자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신호관제 장치 2) 운전취급 일반 3) 전기 · 신호 · 통신 장치 실무 4) 선로전환기 취급방법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14시간 이상

바. 전력의 원격제어 수행자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변전 및 전차선 일반 2) 전력설비 일반 3) 전기 · 신호 · 통신 장치 실무 4) 비상전력 운용계획, 전력공급원격제어장치(SCADA)_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14시간 이상

사. 차량정비 종사자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철도차량 일반 2) 철도시스템 일반 3)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철도차량 중심)	3년이내 14시간 이상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4) 철도차량 정비 실무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아. 시설물 유지보수 종사자(전기, 신호, 통신)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철도전기, 철도신호, 철도통신 일반 2)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전기분야 중심) 3) 철도전기, 철도신호, 철도통신 실무 4)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14시간 이상

자. 시설물 유지보수 종사자(궤도, 토목, 시설, 건축)

교육내용	주기 및 시간
1) 궤도, 토목, 시설, 건축 일반 2)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시설분야 중심) 3) 궤도, 토목, 시설, 건축 일반 실무 4)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3년이내 14시간 이상

2. 비교

가. 직무교육주기는 종전의 교육완료 시점 또는 교육주기가 완료되는 해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며, 해당 직무교육을 교육주기가 완료되는 시점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등 6개월 이상의 해당직무의 정지기간이 발생한 경우, 정지기간의 시작되는 연도와 종료되는 연도를 각각 1년으로 계산한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연수를 제외하고 기산하여야 한다.

나. 신규채용이 되었거나, 타 직무분야로 전직한 경우는 신규채용일 또는 전직일 시점에서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주기를 기산하여야 한다.

다.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전의 교육주기를 적용하여 차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철도운영기관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사무실, 업무현장 외 별도공간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시간의 1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규모 직장훈련교육 또는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화상교육 등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소규모 직장훈련교육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철도운영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될 소규모 직장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내용, 교안, 교육이수사항 등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철도운영기관은 다른 철도운영기관의 교육훈련기관, 운전 또는 관제 교육훈련기관, 철도관련 학회·협회 등 교육기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또는 출장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 재해발생, 감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도운영기관은 위탁교육, 출장교육, 전산망을 활용한 원격교육, 자체교육 등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직무종사별 교육내용 중 1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철도운영기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직무에 필요한 교육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 또는 병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철도종사 업무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운전업무종사자들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

검사대상		검사종류	검사항목		불 합 격 기 준
			문답형 검사	반응형 검사	
1. 영 제21조제1호의 운전업무종사자	고속철도차량 · 제1종전기차량 · 제2종전기차량 · 디젤차량 · 노면전차 · 철도장비	정기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 인식및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 판단및행동력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운전업무종사자	특별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 인식및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 판단및행동력 -추론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2. 영 제21조제2호의 관제업무종사자	정기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작업기억 • 인식및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 판단및행동력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특별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스트레스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인식및기억력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 판단및행동력 -추론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3. 영 제21조제3호의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최초검사	• 인성 -일반성격 -안전성향	• 주의력 -복합기능 -선택주의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 인식 및 기억력 - 시각변별 - 공간지각 - 작업기억 • 판단 및 행동력 - 추론 - 민첩성	
	정기검사	• 인성 - 일반성격 - 안전성향 - 스트레스	• 주의력 - 복합기능 - 선택주의 - 작업기억 • 인식 및 기억력 - 시각변별 - 공간지각 • 판단 및 행동력 - 민첩성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특별검사	• 인성 - 일반성격 - 안전성향 - 스트레스	• 주의력 - 복합기능 - 선택주의 • 인식 및 기억력 - 시각변별 - 공간지각 - 작업기억 • 판단 및 행동력	•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E등급)이 2개 이상인 사람

			-추론 -민첩성	
--	--	--	-------------	--

비고:

1.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단,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특별검사의 복합기능(운전) 및 시각변별(관제/신호) 검사는 시뮬레이터 검사기로 시행한다.

적성검사 판정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해당자만 적습니다.		검사 구분	[]최초 []정기 []특별
검사일		발급번호	
검사 분야	☐ 운전면허 취득(○ 일반차량, ○ 철도장비) ☐ 관제자격증명 취득 ☐ 운전업무 종사(○ 일반차량, ○ 철도장비) ☐ 관제업무 종사 ☐ 신호기 등 취급업무 종사		

검사항목 및 판정

구분	문답형 검사	반응형 검사								종합 점수
검사 항목	인성	주의			인식 및 기억			판단 및 행동		
		복합 기능	선택적 주의	지속적 주의	시각 변별	공간 지각	작업 기억	추론	민첩성	
등급										
점수										

종합 판정	판정 형태	검사관 의견
	[]합격	
	[]불합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담당 검사관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적성검사기관의 장

직인

고장·결함·기능장애 보고서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		
발생장소			
차량번호(편성번호)		누적주행거리	km/
형식승인번호		완성검사번호	
정비책임자	(부서 및 성명)	정비담당자	(부서 및 성명)
발생개요			
현상 및 고장개소			
해당부품	해당 부품(장치) 명칭 및 부품번호(자재번호) 기재		
최근정비 및 개조내역	최근 정비 종류 및 개조현황, 시행일자 등		
고장원인 및 조치사항			
		보고자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철도안전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라 고장·결함·기능장애사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0. 00. 00.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철도안전 자율보고서

※ 필수사항

보고자	성명:	연락처:	(소속:	직명:	)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발생장소			
사건/상황 개요	※ 사건/상황의 발생 경위, 원인, 조치사항 등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선택사항

보고분야	☐ 안전관리		☐ 철도운행		☐ 철도차량	
	☐ 노반·궤도·건축		☐ 전철전력·신호·통신		☐ 기타()	
발생장소 (세부사항)	행정구역	도(시) 시(군·구) 동(면)				
	선별구간	선(상행선/하행선)역 ~ (역간) 기점 km지점				
	건널목	()건널목, 제()종		안내원	(있음, 없음)	
관계열차	종류: (제 호), 편성: 량, 운행구간:					
피해상황	차량피해	파손: 량 (대파 : 중파 : 소파 :)				
	시설피해					
	운행지장	운휴 : 지연열차: (지연시분: ~)		본선 지장	지장시간 : (복구: 월 일 시 분)	
	피해액	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재산: 기타:)				
관계자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연령	기타사항

「철도안전법」 제6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자율 보고 사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접수번호는 _____번입니다. 보고서 제출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 성명			
보고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철도안전투자공시 기준 등) ① ~ ④ (생략)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신설>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공시 기준 등) ① ~ ④ (현행 제1조의2와 같다.)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생략)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②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5조(안전관리기준 고시방법)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제6조(안전관리체계 유지·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
· 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

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변경
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3서
식)에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관리기준 고시방법) --

. 다만 안전관리기
준이 전문기술적인 사항이 아니
라 판단하는 경우 철도기술심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체계 유지·검사
등) ① -----

-----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

----- 별표1

과 같다.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8조의2(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

의4와 같다.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

----- 별표 1의5와 같다.

제38조의2(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 <삭 제>

② -----

별표11-----

③ <삭 제>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
-----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필증 발급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정비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 등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직무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① (생략)

② -----

----- 완성검사
증명서를 -----

한다.

③ (생 략)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 시기) ① (생 략)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상황에 대한 영상이 모두 촬영될 수 있을 것
가. ~ 나. (생 략)
다. 철도차량 검수 상황
라. (생 략)

2. (생 략)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 시기) ① (현행과 같음)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제86조(철도사고등의 보고) ① ~

③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
시간 등 관련 사실들을 거짓·
허위로 기록하지 말 것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① ~③ (생략)

제86조의2(철도차량에 발생한 고
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 제26조의3 및 제2
6조의6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철
도차량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성능 등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
라 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해당하는 설
계 및 성능 등에 이상이 발견
된 경우

3.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
작결함으로 인해 하자조치 및
피해보상 등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고

장·결합의 경우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서 "국도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
합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중정비가 요구되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이
미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철도차량 정비 중 차상신호
장치, 추진장치, 주행장치 등
주요장치의 고장 등으로 계획
된 열차운행을 위해 출고하지
못한 경우

3. 차량기지 내 신호 및 궤도 장
에 등으로 계획된 열차운행을
위해 출고하지 못한 경우

4.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
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
를 초과한 철도차량 구조의 균
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고
장·결합의 경우

<신 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장·결합·기능장애 보고서(별지 제45호의18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철도안전 자율보고서(별지 제45호의19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